

2013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2013. 08. .



해 양 수 산 부

한국항만협회

◇ 목 차 ◇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참고자료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

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실적공사비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2) 본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제시된 실적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실적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실적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16 품의 할증”을 따른다.
 - ①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 ②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 ③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 ④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 ⑤ 다음의 지세별 구분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지세구분	할증율
야산지	25%
번화가	2차선도로 30%
	4차선도로 25%
	6차선도로 20%
주택가	15%

※ 지세구분 내역표

지구		평탄지	야산지	산악지
구분	지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이	해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기준	표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행조건	도로구배통행	대소로(유)완만양호	대로(무)완급불편	대소로(무)극급극히불량
자연환경	지세수목기상	양호 소수 또는 소목 보통	불편 보통 또는 약간울창 불편	불량 울창 불편
기타조건	교통편숙소통신인력동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리 " "	차도에서 1km이내 불편 " "	차도에서 1km이상 극히 불편 불가 " "

⑥ 다음의 고소작업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구분	높이	할증율
비계틀 불사용	5m미만	0%
	5 ~ 10m	20%증
	10 ~ 15m	30%증
	15 ~ 20m	40%증
	20 ~ 30m	50%증
	30 ~ 40m	60%증
	40 ~ 50m	70%증
	50 ~ 60m	80%증
	60m이상	매 10m 증가마다 10%씩 증
비계틀 사용	10m이상	10%증
	20m이상	20%증
	30m이상	30%증
	50m이상	40%증
	70m이상	매 10m 증가마다 10%씩 증

⑦ 지하 4m이하 작업의 경우 노무비의 10% 할증

- (4) 본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5) 본 실적공사비 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단가

※ 항만 및 어항공사	1
-------------------	---

【공통 적용사항】

- ① 이 단가는 항만 및 어항공사에 적용한다.
- ② 규격에 수록된 장비는 본 단가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이며, 현장여건 및 장비의 작업능력, 작업반경 등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OA02* 배사관 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A020.41000	배사관부설및철거 (해상관)	D760mm×6m (양묘선 89.5kw)	본	123,583	89%
OA020.51000	배사관부설및철거 (해저관)	D760mm×6m (양묘선 89.5kw)	본	85,540	95%
OA020.61000	배사관부설및철거 (육상관)	D760mm×6m	본	86,303	100%
OA021.21000	배사관조립및해체 (해저관)	D760mm×6m	본	82,359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배사관의 부설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육상관의 본당 소요비용에는 부설 및 철거를 위한 노무비를 포함하며, 해상관과 해저관은 부설 및 철거에 필요한 장비(양묘선 89.5kw)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③ 해상관 및 해저관은 대선적재 및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B0**사석 덤프 적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002.11000	사석덤프적재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m ³	1,795	2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사석을 덤프트럭에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OB0** 사석 투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010.11000	사석투하(육상수상)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m ³	1,816	33%
OB020.10000	사석투하(육상수중)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잠수조)	m ³	5,029	64%
OB020.11000	사석투하(육상수중:망태)	각종 (크레인 25톤, 잠수조)	m ³	10,012	68%
OB030.11000	사석투하(해상수상)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m ³	1,810	33%
OB040.11000	사석투하(해상수중)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잠수조)	m ³	3,768	64%
OB040.21000	사석투하(해상수중)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2.0m ³ , 잠수조)	m ³	4,803	6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공사현장에 도착한 사석을 수상 또는 수중 투하하는데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각종 규격은 규격석(0.015~0.03m³급), 준규격석(0.001~0.03m³급) 및 비규격석(0.03m³급이하)을 의미한다. 단, 피복석은 제외한다.
- ③ 해상투하에서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사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B00* 사석투하정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001.11000	사석투하정리	각종 (불도저 19톤)	m ³	418	30%
OB001.21000	사석투하정리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m ³	962	2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공사현장에 덤프트럭으로 투하된 사석을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각종 규격은 규격석(0.015~0.03m³급), 준규격석(0.001~0.03m³급) 및 비규격석(0.03m³급이하)을 의미한다. 단, 피복석은 제외한다.

■ OB0** 사석 제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050.11000	사석제거(육상수상)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m ³	1,693	28%
OB050.21000	사석제거(육상수중)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잠수조)	m ³	2,780	58%
OB060.11000	사석제거(해상수상)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m ³	1,814	25%
OB060.21000	사석제거(해상수중)	각종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잠수조)	m ³	4,145	5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사석을 육상 또는 해상에서 제거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각종 규격은 규격석(0.015~0.03m³급), 준규격석(0.001~0.03m³급) 및 비규격석(0.03m³급이하)을 의미한다. 단, 피복석은 제외한다.
- ③ 사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B30* 피복석 덤프 적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300.11000	피복석덤프적재	0.1~0.4m ³ (크레인 10톤)	m ³	4,734	74%
OB300.21000	피복석덤프적재	0.5 ~ 0.7m ³ (크레인 10톤)	m ³	4,867	73%
OB300.31000	피복석덤프적재	0.8 ~ 1.0m ³ (크레인 10톤)	m ³	5,245	74%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피복석을 덤프트럭에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OB30* 피복석 대선 적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301.22000	피복석대선적재	0.1 ~ 0.4m ³ (크레인 10톤)	m ³	3,424	77%
OB301.31000	피복석대선적재	0.5 ~ 0.7m ³ (크레인 10톤)	m ³	4,991	75%
OB301.41000	피복석대선적재	0.8 ~ 1.0m ³ (크레인 10톤)	m ³	5,032	75%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피복석을 대선에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OB32* 피복석 투하(육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320.01000	피복석투하(육상수상)	0.1 ~ 0.4m ³ (크레인 10톤)	m ³	4,021	69%
OB320.02000	피복석투하(육상수상)	0.1 ~ 0.4m ³ (크레인 25톤)	m ³	5,586	65%
OB320.03000	피복석투하(육상수상)	0.5 ~ 0.7m ³ (크레인 10톤)	m ³	4,196	68%
OB320.04000	피복석투하(육상수상)	0.8 ~ 1.0m ³ (크레인 10톤)	m ³	4,305	67%
OB320.12000	피복석투하(육상수중)	0.1 ~ 0.4m ³ (크레인 10톤, 잠수조)	m ³	6,078	80%
OB320.11000	피복석투하(육상수중)	0.1 ~ 0.4m ³ (크레인 25톤, 잠수조)	m ³	9,332	72%
OB320.21000	피복석투하(육상수중)	0.5 ~ 0.7m ³ (크레인 10톤, 잠수조)	m ³	8,306	79%
OB320.32000	피복석투하(육상수중)	0.8 ~ 1.0m ³ (크레인 10톤, 잠수조)	m ³	8,428	74%
OB320.31000	피복석투하(육상수중)	0.8 ~ 1.0m ³ (크레인 25톤, 잠수조)	m ³	9,767	6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현장에 도착한 피복석을 육상에서 수상 또는 수중으로 투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피복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B3** 피복석 투하(해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330.11000	피복석투하(해상수상)	0.1 ~ 0.4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m ³	7,783	76%
OB330.21000	피복석투하(해상수상)	0.5 ~ 0.7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m ³	8,095	76%
OB330.31000	피복석투하(해상수상)	0.8 ~ 1.0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m ³	8,281	76%
OB340.11000	피복석투하(해상수중)	0.1 ~ 0.4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m ³	9,582	83%
OB340.21000	피복석투하(해상수중)	0.5 ~ 0.7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m ³	11,768	83%
OB340.31000	피복석투하(해상수중)	0.8 ~ 1.0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m ³	11,941	8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피복석을 수상 또는 수중 투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피복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B36* 피복석 제거(육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360.11000	피복석제거(육상수상)	0.1 ~ 0.4m ³ (크레인 10톤)	m ³	3,515	74%
OB360.21000	피복석제거(육상수상)	0.5 ~ 0.7m ³ (크레인 10톤)	m ³	3,666	72%
OB360.31000	피복석제거(육상수상)	0.8 ~ 1.0m ³ (크레인 10톤)	m ³	3,769	74%
OB361.11000	피복석제거(육상수중)	0.1 ~ 0.4m ³ (크레인 10톤, 잠수조)	m ³	6,485	77%
OB361.21000	피복석제거(육상수중)	0.5 ~ 0.7m ³ (크레인 10톤, 잠수조)	m ³	6,646	75%
OB361.31000	피복석제거(육상수중)	0.8 ~ 1.0m ³ (크레인 10톤, 잠수조)	m ³	6,743	7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수상 또는 수중에 투하된 피복석을 육상에서 제거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피복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B37* 피복석 제거(해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371.11000	피복석제거(해상수상)	0.1 ~ 0.4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m ³	5,641	77%
OB371.21000	피복석제거(해상수상)	0.5 ~ 0.7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m ³	5,867	76%
OB371.31000	피복석제거(해상수상)	0.8 ~ 1.0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m ³	6,002	76%
OB370.21000	피복석제거(해상수중)	0.1 ~ 0.4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m ³	9,161	80%
OB370.31000	피복석제거(해상수중)	0.5 ~ 0.7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m ³	9,414	78%
OB370.41000	피복석제거(해상수중)	0.8 ~ 1.0m ³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m ³	9,565	7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수상 또는 수중에 투하된 피복석을 해상에서 제거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피복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B4** 필터사석 투하(육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410.11000	필터사석투하(육상수상)	D=100mm 이하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m ³	910	38%
OB420.11000	필터사석투하(육상수중)	D=100mm 이하 (굴삭기(무한궤도 1.0m ³), 잠수조)	m ³	4,026	6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육상현장에 도착한 필터사석을 수상 또는 수중에 투하하는데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필터사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B4** 필터사석 투하(해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B430.11000	필터사석투하(해상수상)	D=100mm 이하 (굴삭기(무한궤도 1.0m³))	m³	1,204	36%
OB440.11000	필터사석투하(해상수중)	D=100mm 이하 (굴삭기(무한궤도 1.0m³), 잠수조)	m³	4,106	6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필터사석을 수상 또는 수중 투하하는데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필터사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C1** 사석기초고르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C110.11000	기초고르기	수상	m²	11,114	100%
OC120.11000	기초고르기	수중(H=0~15m) (잠수조)	m²	55,865	85%

■ OC*** 사석속고르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C210.11000	사석속고르기	수상	m²	9,186	100%
OC520.11000	사석속고르기	수중(H=0~15m) (잠수조)	m²	23,118	85%

■ OC3** 피복석고르기

공중코드	공중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C310.01000	피복석고르기(육상수상)	0.5m ³ 이하 (크레인 10톤)	m ²	17,268	79%
OC310.02000	피복석고르기(육상수상)	0.6~1.0m ³ 이하, (크레인 10톤)	m ²	17,762	78%
OC310.11000	피복석고르기(육상수중)	0.5m ³ 이하, 수중(H=0~15m) (크레인 10톤, 잠수조)	m ²	48,562	73%
OC310.12000	피복석고르기(육상수중)	0.6~1.0m ³ 이하, 수중(H=0~15m) (크레인 25톤, 잠수조)	m ²	56,830	60%
OC330.01000	피복석고르기(해상수상)	0.2m ³ 이하 (이우선 1톤)	m ²	20,311	96%
OC330.02000	피복석고르기(해상수상)	0.3~0.5m ³ 이하 (이우선 3톤)	m ²	21,016	95%
OC330.03000	피복석고르기(해상수상)	0.6~1.0m ³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m ²	33,371	69%
OC340.11000	피복석고르기(해상수중)	0.2m ³ 이하, 수중(H=0~15m) (이우선 1톤, 잠수조)	m ²	44,166	87%
OC340.12000	피복석고르기(해상수중)	0.3~0.5m ³ 이하, 수중(H=0~15m) (이우선 3톤, 잠수조)	m ²	46,331	87%
OC340.13000	피복석고르기(해상수중)	0.6~1.0m ³ 이하, 수중(H=0~15m)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m ²	57,264	79%

【단가정의】

- ① 해상의 피복석고르기는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를 별도 계상한다.

■ OC4** 피복석속고르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C410.11000	피복석속고르기(육상수상)	0.5m ³ 이하 (크레인 10톤)	m ²	21,554	78%
OC410.12000	피복석속고르기(육상수상)	0.6~1.0m ³ 이하 (크레인 10톤)	m ²	21,554	78%
OC420.12000	피복석속고르기(육상수중)	0.5m ³ 이하 수중(H=0~15m) (크레인 10톤, 잠수조)	m ²	43,803	75%
OC420.13000	피복석속고르기(육상수중)	0.6~1.0m ³ 이하 수중(H=0~15m) (크레인 25톤, 잠수조)	m ²	52,387	58%
OC430.11000	피복석속고르기(해상수상)	0.2m ³ 이하 (이우선 1톤)	m ²	17,675	95%
OC430.21000	피복석속고르기(해상수상)	0.3~0.5m ³ 이하 (이우선 3톤)	m ²	18,323	91%
OC430.31000	피복석속고르기(해상수상)	0.6~1.0m ³ 이하 (조합기중기선 10톤)	m ²	25,200	71%
OC420.11000	피복석속고르기(해상수중)	0.2m ³ 이하 수중(H=0~15m) (이우선 1톤, 잠수조)	m ²	41,791	87%
OC420.21000	피복석속고르기(해상수중)	0.3~0.5m ³ 이하 수중(H=0~15m) (이우선 3톤, 잠수조)	m ²	42,700	86%
OC420.31000	피복석속고르기(해상수중)	0.6~1.0m ³ 이하 수중(H=0~15m)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m ²	48,238	75%

【단가정의】

- ① 해상의 피복석속고르기는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를 별도 계상한다.

■ OC7** 필터사석고르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C710.11000	필터사석고르기	수상	m ²	821	100%
OC720.11000	필터사석고르기	수중(H=0~15m) (잠수조)	m ²	12,280	86%

■ OD00* 블록 및 케이슨제작 등 (유로폼)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00.11000	유로폼	벽체, 0~7m 미만	m ²	16,346	8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상치콘크리트, 블록 및 케이슨 등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유로폼의 제작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OD00* 블록 및 케이슨제작 등 (콘크리트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00.21000	무근콘크리트타설 / 펌프카	슬럼프 8~12cm	m ³	11,445	64%
OD000.31000	철근콘크리트타설 / 펌프카	슬럼프 8~12cm	m ³	11,679	64%
OD000.71000	콘크리트타설	소형구조물	m ³	36,941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블록 및 케이슨, 상치콘크리트 등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단, 레미콘 재료비와 양생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③ 소형구조물은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력비빔 3m³ 내외, 기계비빔 10m³ 내외)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OD00* 블록 및 케이슨제작 등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00.41000	철근가공 및 조립	간단	ton	381,884	97%
OD000.51000	철근가공 및 조립	보통	ton	395,446	97%
OD000.81000	철근가공 및 조립	복잡	ton	499,747	9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블록 및 케이슨, 상치콘크리트 등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철근의 현장내 소운반, 절단, 가공 및 조립비용을 포함한다.
- ② 단, 철근 재료비와 현장까지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이 단가는 철근의 사용고재가 감액되어 있다.
- ④ 수직고 7m 이상에서 크레인 등 장비사용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⑤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m³미만)에서는 노무비를 3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단가보정】

- ① 단일공사에 있어 “철근가공 및 조립”의 전체수량이 10ton 미만일 경우 위 단가의 115%를 적용한다.

■ OD00* 비닐 깔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00.61000	비닐깔기	P.E 필름 (T=0.1mm)	m ²	226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블록, 케이슨 등의 제작을 위한 비닐깔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비닐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OD40* 콘크리트 블록의 이적 및 적재(육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404.0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5톤 미만 (크레인 10톤)	개	15,780	66%
OD404.1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5~10톤 미만 (크레인 15톤)	개	23,726	59%
OD404.2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10~15톤 미만 (크레인 20톤)	개	29,399	53%
OD404.3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15~20톤 미만 (크레인 25톤)	개	34,810	50%
OD404.4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20~25톤 미만 (크레인 35톤)	개	46,430	41%
OD404.42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25~30톤 미만 (크레인 40톤)	개	52,966	41%
OD404.43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30~35톤 미만 (크레인 50톤)	개	64,866	36%
OD404.5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35~40톤 미만 (크레인 50톤)	개	77,041	36%
OD404.6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40~45톤 미만 (크레인 70톤)	개	93,528	33%
OD404.7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45~55톤 미만 (크레인 70톤)	개	99,414	33%
OD404.8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55~65톤 미만 (크레인 100톤)	개	140,749	25%
OD404.91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65~80톤 미만 (크레인 100톤)	개	140,749	25%
OD404.92000	이적및적재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80~100톤 미만 (크레인 150톤)	개	176,199	2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제작된 콘크리트 블록을 이적 및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콘크리트 블록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D40* 콘크리트 블록 대선 적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403.01000	블록대선적재	5톤 미만 (크레인 10톤)	개	10,145	74%
OD403.12000	블록대선적재	5~10톤 미만 (크레인 15톤)	개	14,840	67%
OD403.11000	블록대선적재	5~10톤 미만 (크레인 20톤)	개	18,042	66%
OD403.21000	블록대선적재	10~15톤 미만 (크레인 20톤)	개	20,019	62%
OD403.31000	블록대선적재	15~20톤 미만 (크레인 25톤)	개	23,685	60%
OD403.41000	블록대선적재	20~25톤 미만 (크레인 30톤)	개	26,457	55%
OD403.42000	블록대선적재	20~25톤 미만 (크레인 35톤)	개	31,026	51%
OD403.43000	블록대선적재	25~30톤 미만 (크레인 40톤)	개	31,822	51%
OD403.44000	블록대선적재	30~35톤 미만 (크레인 50톤)	개	38,136	46%
OD403.51000	블록대선적재	35~40톤 미만 (크레인 50톤)	개	38,136	45%
OD403.62000	블록대선적재	40~45톤 미만 (크레인 70톤)	개	49,694	42%
OD403.61000	블록대선적재	40~45톤 미만 (크레인 100톤)	개	68,259	34%
OD403.71000	블록대선적재	45~55톤 미만 (크레인 70톤)	개	55,749	42%
OD403.82000	블록대선적재	55~65톤 미만 (크레인 100톤)	개	80,655	33%
OD403.81000	블록대선적재	55~65톤 미만 (크레인 150톤)	개	98,039	27%
OD403.92000	블록대선적재	65~80톤 미만 (크레인 100톤)	개	85,079	33%
OD403.91000	블록대선적재	65~80톤 미만 (크레인 150톤)	개	103,346	27%
OD403.93000	블록대선적재	80~100톤 미만 (크레인 150톤)	개	108,302	2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콘크리트 블록을 대선에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콘크리트 블록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D40* 콘크리트 블록의 이적 및 적재(해상)

공중코드	공중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400.01000	이적및대선적재	5톤 미만 (크레인 10톤)	개	22,679	76%
OD400.11000	이적및대선적재	5~10톤 미만 (크레인 15톤)	개	32,715	69%
OD400.21000	이적및대선적재	10~15톤 미만 (크레인 20톤)	개	39,449	64%
OD400.31000	이적및대선적재	15~20톤 미만 (크레인 25톤)	개	45,996	61%
OD400.41000	이적및대선적재	20~25톤 미만 (크레인 35톤)	개	58,920	52%
OD400.42000	이적및대선적재	25~30톤 미만 (크레인 40톤)	개	65,681	51%
OD400.43000	이적및대선적재	30~35톤 미만 (크레인 50톤)	개	78,751	46%
OD400.51000	이적및대선적재	35~40톤 미만 (크레인 50톤)	개	90,945	44%
OD400.61000	이적및대선적재	40~45톤 미만 (크레인 70톤)	개	101,329	42%
OD400.71000	이적및대선적재	45~55톤 미만 (크레인 70톤)	개	106,087	42%
OD400.81000	이적및대선적재	55~65톤 미만 (크레인 80톤)	개	146,017	37%
OD400.82000	이적및대선적재	55~65톤 미만 (크레인 100톤)	개	162,057	34%
OD400.91000	이적및대선적재	65~80톤 미만 (크레인 100톤)	개	169,532	36%
OD400.92000	이적및대선적재	80~100톤 미만 (크레인 150톤)	개	201,309	2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제작된 콘크리트 블록을 이적 및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콘크리트 블록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D40* 콘크리트 블록의 전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401.21000	블록전치(1회)	5톤 미만 (크레인 10톤)	개	11,538	78%
OD401.31000	블록전치(1회)	5~10톤 미만 (크레인 15톤)	개	16,787	70%
OD401.41000	블록전치(1회)	10~15톤 미만 (크레인 20톤)	개	19,181	63%
OD401.42000	블록전치(1회)	15~20톤 미만 (크레인 25톤)	개	22,415	60%
OD401.51000	블록전치(1회)	15~20톤 미만 (크레인 35톤)	개	26,578	53%
OD401.61000	블록전치(1회)	20~25톤 미만 (크레인 35톤)	개	31,026	52%
OD401.62000	블록전치(1회)	25~30톤 미만 (크레인 40톤)	개	33,104	51%
OD401.63000	블록전치(1회)	30~35톤 미만 (크레인 50톤)	개	39,674	46%
OD401.71000	블록전치(1회)	35~40톤 미만 (크레인 50톤)	개	39,776	44%
OD401.81000	블록전치(1회)	40~45톤 미만 (크레인 70톤)	개	52,726	43%
OD401.91000	블록전치(1회)	45~55톤 미만 (크레인 70톤)	개	59,152	42%
OD402.01000	블록전치(1회)	55~65톤 미만 (크레인 100톤)	개	72,829	35%
OD402.11000	블록전치(1회)	65~80톤 미만 (크레인 100톤)	개	81,852	34%
OD402.21000	블록전치(1회)	80~100톤 미만 (크레인 150톤)	개	100,081	2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제작된 콘크리트 블록을 전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콘크리트 블록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D01* 콘크리트 블록 거치(육상수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13.0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5톤 미만 (크레인 10톤)	개	45,834	83%
OD013.1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5~10톤 미만 (크레인 15톤)	개	53,281	69%
OD013.2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10~15톤 미만 (크레인 20톤)	개	79,589	69%
OD013.3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15~20톤 미만 (크레인 25톤)	개	99,565	67%
OD013.4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20~25톤 미만 (크레인 35톤)	개	197,683	66%
OD013.42000	블록거치(육상수상)	25~30톤 미만 (크레인 40톤)	개	200,957	65%
OD013.43000	블록거치(육상수상)	30~35톤 미만 (크레인 50톤)	개	253,211	61%
OD013.5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35~40톤 미만 (크레인 50톤)	개	253,211	61%
OD013.6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40~45톤 미만 (크레인 70톤)	개	268,923	57%
OD013.7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45~55톤 미만 (크레인 70톤)	개	268,923	57%
OD013.8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55~65톤 미만 (크레인 100톤)	개	318,201	48%
OD013.91000	블록거치(육상수상)	65~80톤 미만 (크레인 100톤)	개	318,201	48%
OD013.92000	블록거치(육상수상)	80~100톤 미만 (크레인 150톤)	개	373,748	4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육상현장에 도착한 콘크리트 블록을 수상 거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콘크리트 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D01* 콘크리트 블록 거치(육상수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23.0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5톤 미만 (크레인 10톤, 잠수조)	개	59,844	75%
OD023.1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5~10톤 미만 (크레인 15톤, 잠수조)	개	73,809	70%
OD023.2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10~15톤 미만 (크레인 20톤, 잠수조)	개	106,259	69%
OD023.3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15~20톤 미만 (크레인 25톤, 잠수조)	개	128,080	67%
OD023.4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20~25톤 미만 (크레인 35톤, 잠수조)	개	226,563	66%
OD023.42000	블록거치(육상수중)	25~30톤 미만 (크레인 40톤, 잠수조)	개	229,579	65%
OD023.43000	블록거치(육상수중)	30~35톤 미만 (크레인 50톤, 잠수조)	개	305,128	61%
OD023.5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35~40톤 미만 (크레인 50톤, 잠수조)	개	305,128	61%
OD023.6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40~45톤 미만 (크레인 70톤, 잠수조)	개	320,600	58%
OD023.7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45~55톤 미만 (크레인 70톤, 잠수조)	개	320,600	58%
OD023.8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55~65톤 미만 (크레인 100톤, 잠수조)	개	369,130	50%
OD023.91000	블록거치(육상수중)	65~80톤 미만 (크레인 100톤, 잠수조)	개	369,130	50%
OD023.92000	블록거치(육상수중)	80~100톤 미만 (크레인 150톤, 잠수조)	개	423,832	4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육상현장에 도착한 콘크리트 블록을 수중 거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콘크리트 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D0** 콘크리트 블록 거치(해상수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33.0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10톤)	개	49,681	76%
OD033.1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5~10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20톤)	개	68,990	66%
OD033.2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10~1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30톤)	개	114,478	67%
OD033.3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15~20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40톤)	개	166,461	63%
OD033.4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20~2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50톤)	개	260,201	64%
OD033.42000	블록거치(해상수상)	25~30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70톤)	개	275,764	61%
OD033.43000	블록거치(해상수상)	30~3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70톤)	개	322,837	61%
OD033.5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35~40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70톤)	개	368,260	61%
OD033.52000	블록거치(해상수상)	35~40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80톤)	개	368,260	56%
OD033.6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40~4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100톤)	개	376,480	52%
OD033.7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45~5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150톤)	개	432,351	45%
OD033.8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55~6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150톤)	개	432,351	45%
OD033.91000	블록거치(해상수상)	65~80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150톤)	개	432,351	45%
OD033.92000	블록거치(해상수상)	80~100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200톤)	개	521,800	4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콘크리트 블록을 수상 거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콘크리트 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D0** 콘크리트 블록 거치(해상수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043.02000	블록거치(해상수중)	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개	70,190	75%
OD043.01000	블록거치(해상수중)	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15톤, 잠수조)	개	87,017	71%
OD043.11000	블록거치(해상수중)	5~10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15톤, 잠수조)	개	100,383	71%
OD043.12000	블록거치(해상수중)	5~10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20톤, 잠수조)	개	101,264	68%
OD043.21000	블록거치(해상수중)	10~1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25톤, 잠수조)	개	146,303	68%
OD043.22000	블록거치(해상수중)	10~1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30톤, 잠수조)	개	147,365	67%
OD043.31000	블록거치(해상수중)	15~20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40톤, 잠수조)	개	208,458	63%
OD043.41000	블록거치(해상수중)	20~2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50톤, 잠수조)	개	330,963	64%
OD043.42000	블록거치(해상수중)	25~30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70톤, 잠수조)	개	337,049	61%
OD043.43000	블록거치(해상수중)	30~3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70톤, 잠수조)	개	371,840	61%
OD043.51000	블록거치(해상수중)	35~40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70톤, 잠수조)	개	442,111	61%
OD043.52000	블록거치(해상수중)	35~40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80톤, 잠수조)	개	443,169	57%
OD043.61000	블록거치(해상수중)	40~4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80톤, 잠수조)	개	458,997	57%
OD043.62000	블록거치(해상수중)	40~4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100톤, 잠수조)	개	458,997	53%
OD043.71000	블록거치(해상수중)	45~5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100톤, 잠수조)	개	501,413	53%
OD043.72000	블록거치(해상수중)	45~5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150톤, 잠수조)	개	505,762	47%
OD043.81000	블록거치(해상수중)	55~65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150톤, 잠수조)	개	559,867	47%
OD043.91000	블록거치(해상수중)	65~80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150톤, 잠수조)	개	566,659	47%
OD043.92000	블록거치(해상수중)	80~100톤 미만 (조합기중기선 200톤, 잠수조)	개	652,036	4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콘크리트 블록을 수중 거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콘크리트 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D3 소파블록 제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00.01000	T.T.P 제작	2톤급	개	78,087	89%
OD300.02000	T.T.P 제작	3.2톤급	개	120,470	91%
OD300.03000	T.T.P 제작	4톤급	개	129,678	90%
OD300.04000	T.T.P 제작	5톤급	개	153,475	90%
OD300.05000	T.T.P 제작	6.3톤급	개	188,028	89%
OD300.06000	T.T.P 제작	8톤급	개	228,212	89%
OD300.11000	T.T.P 제작	10톤급	개	270,619	89%
OD300.12000	T.T.P 제작	12.5톤급	개	322,549	89%
OD300.13000	T.T.P 제작	16톤급	개	375,295	89%
OD300.21000	T.T.P 제작	20톤급	개	460,393	88%
OD300.22000	T.T.P 제작	25톤급	개	559,815	88%
OD300.31000	T.T.P 제작	32톤급	개	639,944	87%
OD300.41000	T.T.P 제작	40톤급	개	821,561	87%
OD300.51000	T.T.P 제작	50톤급	개	944,262	87%
OD300.61000	T.T.P 제작	64톤급	개	1,113,290	86%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T.T.P 제작에 필요한 가설재(철재거푸집, 강관비계 등) 설치 및 해체, 콘크리트타설과 양생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전치 및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③ 레미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OD30* 소파블록 대선 적재

공중코드	공중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03.01000	소파블록대선적재	5톤급 미만 (크레인 10톤)	개	11,538	77%
OD303.11000	소파블록대선적재	5~10톤급 미만 (크레인 15톤)	개	15,745	68%
OD303.22000	소파블록대선적재	10~15톤급 미만 (크레인 20톤)	개	19,115	63%
OD303.21000	소파블록대선적재	10~15톤급 미만 (크레인 25톤)	개	21,324	63%
OD303.31000	소파블록대선적재	15~20톤급 미만 (크레인 25톤)	개	22,348	59%
OD303.41000	소파블록대선적재	20~25톤급 미만 (크레인 35톤)	개	28,764	51%
OD303.42000	소파블록대선적재	25~30톤급 미만 (크레인 40톤)	개	32,996	51%
OD303.43000	소파블록대선적재	30~35톤급 미만 (크레인 50톤)	개	39,539	46%
OD303.51000	소파블록대선적재	35~40톤급 미만 (크레인 50톤)	개	42,483	46%
OD303.61000	소파블록대선적재	40~45톤급 미만 (크레인 70톤)	개	49,437	42%
OD303.71000	소파블록대선적재	45~55톤급 미만 (크레인 70톤)	개	55,960	42%
OD303.81000	소파블록대선적재	55~65톤급 미만 (크레인 100톤)	개	77,743	34%
OD303.91000	소파블록대선적재	65~80톤급 미만 (크레인 100톤)	개	81,880	34%
OD303.92000	소파블록대선적재	80~100톤급 미만 (크레인 150톤)	개	99,885	2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소파블록을 대선에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소파블록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D30* 소파블록의 이적 및 적재

공중코드	공중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01.31000	소파블록이적및덤프적재	5톤급 미만 (크레인 10톤)	개	24,055	78%
OD302.11000	소파블록이적및트레일러적재	5~10톤급 미만 (크레인 15톤)	개	31,834	68%
OD302.21000	소파블록이적및트레일러적재	10~15톤급 미만 (크레인 20톤)	개	38,419	63%
OD302.31000	소파블록이적및트레일러적재	15~20톤급 미만 (크레인 25톤)	개	44,820	60%
OD302.41000	소파블록이적및트레일러적재	20~25톤급 미만 (크레인 35톤)	개	57,432	52%
OD302.42000	소파블록이적및트레일러적재	25~30톤급 미만 (크레인 40톤)	개	63,998	50%
OD302.43000	소파블록이적및트레일러적재	30~35톤급 미만 (크레인 50톤)	개	76,723	45%
OD302.51000	소파블록이적및트레일러적재	35~40톤급 미만 (크레인 50톤)	개	82,818	45%
OD302.61000	소파블록이적및트레일러적재	40~45톤급 미만 (크레인 70톤)	개	96,326	42%
OD302.71000	소파블록이적및트레일러적재	45~55톤급 미만 (크레인 70톤)	개	109,151	42%
OD302.81000	소파블록이적및트레일러적재	55~65톤급 미만 (크레인 100톤)	개	153,324	34%
OD302.91000	소파블록이적및트레일러적재	65~80톤급 미만 (크레인 100톤)	개	160,991	34%
OD302.92000	소파블록이적및트레일러적재	80~100톤급 미만 (크레인 150톤)	개	196,392	2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제작된 소파블록을 이적 및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소파블록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D30* 소파블록의 전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01.32000	소파블록전치(1회)	5톤급 미만 (크레인 10톤)	개	11,538	78%
OD301.51000	소파블록전치(1회)	5~10톤급 미만 (크레인 15톤)	개	16,138	68%
OD301.61000	소파블록전치(1회)	10~15톤급 미만 (크레인 15톤)	개	18,893	71%
OD301.62000	소파블록전치(1회)	10~15톤급 미만 (크레인 20톤)	개	19,593	63%
OD301.71000	소파블록전치(1회)	15~20톤급 미만 (크레인 25톤)	개	22,908	59%
OD301.81000	소파블록전치(1회)	20~25톤급 미만 (크레인 35톤)	개	31,026	51%
OD301.82000	소파블록전치(1회)	25~30톤급 미만 (크레인 40톤)	개	33,820	51%
OD301.83000	소파블록전치(1회)	30~35톤급 미만 (크레인 50톤)	개	40,529	46%
OD301.84000	소파블록전치(1회)	35~40톤급 미만 (크레인 50톤)	개	43,545	46%
OD301.85000	소파블록전치(1회)	40~45톤급 미만 (크레인 70톤)	개	50,673	42%
OD301.86000	소파블록전치(1회)	45~55톤급 미만 (크레인 70톤)	개	57,360	42%
OD301.87000	소파블록전치(1회)	55~65톤급 미만 (크레인 100톤)	개	79,688	34%
OD301.91000	소파블록전치(1회)	65~80톤급 미만 (크레인 100톤)	개	83,927	34%
OD301.92000	소파블록전치(1회)	80~100톤급 미만 (크레인 150톤)	개	102,383	2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제작된 소파블록을 전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소파블록 제작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D31* 소파블록 거치(육상수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13.0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5톤급 미만 (크레인 10톤)	개	30,627	72%
OD313.1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5~10톤급 미만 (크레인 15톤)	개	44,403	65%
OD313.2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10~15톤급 미만 (크레인 20톤)	개	55,001	60%
OD313.3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15~20톤급 미만 (크레인 25톤)	개	67,744	57%
OD313.4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20~25톤급 미만 (크레인 35톤)	개	101,315	56%
OD313.42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25~30톤급 미만 (크레인 40톤)	개	103,465	55%
OD313.43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30~35톤급 미만 (크레인 50톤)	개	125,440	50%
OD313.5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35~40톤급 미만 (크레인 50톤)	개	128,906	51%
OD313.6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40~45톤급 미만 (크레인 70톤)	개	139,075	47%
OD313.7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45~55톤급 미만 (크레인 70톤)	개	142,542	49%
OD313.8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55~65톤급 미만 (크레인 100톤)	개	170,297	39%
OD313.9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65~80톤급 미만 (크레인 100톤)	개	173,763	40%
OD313.92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	80~100톤급 미만 (크레인 150톤)	개	201,401	3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육상현장에 도착한 소파블록을 수상 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소파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③ 이 단가는 소파블록 층적거치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 OD32* 소파블록 거치(육상수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23.0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5톤급 미만 (크레인 10톤, 잠수조)	개	48,713	74%
OD323.1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5~10톤급 미만 (크레인 15톤, 잠수조)	개	70,783	69%
OD323.2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10~15톤급 미만 (크레인 20톤, 잠수조)	개	87,399	65%
OD323.3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15~20톤급 미만 (크레인 25톤, 잠수조)	개	109,047	63%
OD323.4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20~25톤급 미만 (크레인 35톤, 잠수조)	개	144,009	58%
OD323.42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25~30톤급 미만 (크레인 40톤, 잠수조)	개	150,298	58%
OD323.43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30~35톤급 미만 (크레인 50톤, 잠수조)	개	205,439	57%
OD323.5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35~40톤급 미만 (크레인 50톤, 잠수조)	개	209,646	58%
OD323.6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40~45톤급 미만 (크레인 70톤, 잠수조)	개	217,779	53%
OD323.7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45~55톤급 미만 (크레인 70톤, 잠수조)	개	221,986	54%
OD323.8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55~65톤급 미만 (크레인 100톤, 잠수조)	개	255,669	46%
OD323.91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65~80톤급 미만 (크레인 100톤, 잠수조)	개	259,876	46%
OD323.92000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	80~100톤급 미만 (크레인 150톤, 잠수조)	개	297,626	3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육상현장에 도착한 소파블록을 수중 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소파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③ 이 단가는 소파블록 층적거치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 OD33* 소파블록 거치(해상수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33.0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5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10톤)	개	36,887	73%
OD333.1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5~10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20톤)	개	56,047	63%
OD333.2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10~15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30톤)	개	82,131	60%
OD333.3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15~20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40톤)	개	103,277	56%
OD333.4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20~25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50톤)	개	136,088	56%
OD333.42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25~30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70톤)	개	146,254	52%
OD333.43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30~35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70톤)	개	161,306	52%
OD333.5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35~40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80톤)	개	178,874	47%
OD333.6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40~45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100톤)	개	193,708	44%
OD333.7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45~55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150톤)	개	220,245	35%
OD333.8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55~65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150톤)	개	226,903	37%
OD333.9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65~80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150톤)	개	233,560	39%
OD333.92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	80~100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200톤)	개	280,685	3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소파블록을 수상 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소파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이 단가는 소파블록 층적거치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 OD34* 소파블록 거치(해상수중)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D343.1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5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개	64,854	81%
OD343.2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5~10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20톤, 잠수조)	개	84,750	67%
OD343.3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10~15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30톤, 잠수조)	개	119,821	64%
OD343.4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15~20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40톤, 잠수조)	개	152,673	60%
OD343.42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20~25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50톤, 잠수조)	개	192,195	59%
OD343.43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25~30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70톤, 잠수조)	개	204,525	55%
OD343.5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30~35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70톤, 잠수조)	개	252,520	57%
OD343.6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35~40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80톤, 잠수조)	개	274,329	53%
OD343.7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40~45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100톤, 잠수조)	개	281,557	50%
OD343.72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45~55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150톤, 잠수조)	개	325,692	42%
OD343.8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55~65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150톤, 잠수조)	개	333,958	43%
OD343.91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65~80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150톤, 잠수조)	개	342,223	45%
OD343.92000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	80~100톤급 미만 (조합기중기선 200톤, 잠수조)	개	400,728	4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소파블록을 수중 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소파블록 운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④ 이 단가는 소파블록 증적거치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한 단가이다.

■ OI10* 오락방지막 대선 적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I100.11000	오락방지막대선적재	h=3~5m, 1경간=20m (크레인 10톤)	경간	34,383	6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오락방지막을 대선에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단, 앵커블록 제작 및 운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OI11* 오락방지막 조립 및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I110.11000	오락방지막조립및설치	h=3~5m, 1경간=20m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경간	137,142	8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오락방지막체의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해상장비비 및 소요 비용이 포함되며 주자재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② 단, 앵커블록 제작 및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OI12* 오락방지막 해체 및 철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I120.11000	오락방지막해체및철거	h=3~5m, 1경간=20m (조합기중기선 10톤, 잠수조)	경간	146,923	8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오락방지막체의 해체 및 철거에 필요한 해상장비비 및 소요 비용이 포함된다.
- ② 단, 앵커블록의 해체 및 철거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예선과 피예인 노력비는 별도 계상한다.

■ OI14* 오락방지막 유지관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I140.11000	오락방지막유지관리	예산(30kw), 잠수조	회	747,547	8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오락방지막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유지관리 점검은 1일당, 55 경간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OI31* 앵커블록 설치 및 철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I310.01000	앵커블록(돌망태) 조립및설치	조력인부	개	5,135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오락방지막의 설치 시 필요한 앵커블록(돌망태)의 조립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OI32* 앵커블록 석재담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I320.01000	앵커블록(돌망태) 석재담기	굴삭기(무한궤도 1.0m)	개	14,956	9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오락방지막의 설치 시 필요한 앵커블록(돌망태)을 망태담기 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OI33* 앵커블록 대선적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01330.01000	앵커블록 대선적재	크레인 10톤	개	9,578	6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오탉방지막의 설치 시 필요한 앵커블록을 대선에 적재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OI34* 앵커블록 거치(해상)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01340.01000	앵커블록거치	수중 (조합기중기선 15톤, 잠수조)	개	110,216	73%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해상현장에 도착한 오탉방지막 설치용 앵커블록을 수중 거치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OG20** 고무 방충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G200.11000	고무방충재설치	각종 (크레인 10톤)	개	145,501	6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고무방충재(V형, O형, BP형)를 설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단, 고무방충재 재료비(고무방충재, 앵커볼트 등), 작업대 설치비와 앵커 구멍 천공비 및 방충재의 소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OR12* 계선주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R120.11000	계선주설치	각종 (크레인 10톤)	기	92,194	7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안벽 및 물양장 등의 계선직주 또는 곡주 설치 시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비용이다.
- ② 단, 계선주 재료비(앵커볼트 등) 및 부속공사비(도장, 콘크리트 채움 등)는 별도 계상한다.

■ OR29* 차막이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R291.01000	차막이 설치	P.E (150×150×1,000)	개	6,069	100%
OR292.01000	차막이 설치	STS (150×150×1,000)	개	48,393	91%
OR293.01000	차막이 설치	FREP (150×170×1,000)	개	39,980	87%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안벽 및 물양장 등의 차막이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단, 차막이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③ P.E 차막이 설치 단가는 앵커매입, 볼트조이기가 포함된 인력의 비용이다.
- ④ STS 차막이 설치 단가는 콘크리트 구멍뚫기, 잡철물설치(간단), 콘크리트 타설(소형), 차막이 도장 등이 포함된 재료비와 인력의 비용이다.
- ⑤ FREP 차막이 설치 단가는 콘크리트 치핑 및 신규접착제, 앵커볼트 설치, 모르터 포설 및 접착제 안착, 에폭시 페인트칠 등이 포함된 재료비와 인력의 비용이다.

■ OR30* 모서리보호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R300.01000	모서리 보호	STS강판(9t*100w)	m	163,796	24%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안벽 및 물양장의 상치콘크리트 모서리 보호를 위한 스테인리스 강판, 도장, 잡철물 제작설치 등 모서리 보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OX00* 필터매트부설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02.31000	필터매트 부설	수상	m ²	600	100%
OX002.41000	필터매트 부설	수중 (잠수조)	m ²	971	92%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가공(매트풀기, 봉합 및 감기 등)비용, 소운반(목도) 및 부설 등 소요비용과, 수중의 경우는 잠수조와 작업반장 등의 비용도 포함한다.
 ② 매트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OX00* 상치지보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03.10000	상치지보공 제작	L형강-65×65×6	m	28,273	98%
OX003.01000	상치지보공조립및해체	L형강-65×65×6, 800×800×1,100	m	24,959	51%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상치지보공 제작과 조립 및 해체에 필요한 용접봉, 산소, 아세틸렌 등의 재료비와 인력의 비용이다.
 ② 단, 형강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OX00* 신축이음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04.01000	신축이음설치	합판(T=12mm)	m ²	12,297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신축이음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② 합판과 충전재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OX00*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06.01000	잡철물 제작	간단	ton	2,891,329	95%
OX006.11000	잡철물 제작	보통	ton	3,404,225	95%
OX006.21000	잡철물 제작	복잡	ton	4,121,339	94%
OX006.02000	잡철물 설치	간단	ton	714,078	96%
OX006.12000	잡철물 설치	보통	ton	853,778	95%
OX006.22000	잡철물 설치	복잡	ton	996,074	9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잡철물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용접봉,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전력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 OX00* 토사 및 기초잡석 다짐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07.01000	다짐	래머(80kg)	m ³	3,904	89%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토사, 기초잡석 등을 다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OX0** 바탕만들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08.01000	바탕만들기	철재면	m ²	1,605	95%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계선주 및 차막이 설치, 거푸집(이글루 블록) 제작 등에 필요한 바탕만들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 기구손료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 OX0** 녹막이페인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09.01000	녹막이페인트칠	철재면, 2회 붓칠	m ²	4,454	7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계선주 및 차막이 설치, 거푸집(이글루 블록) 제작 등에 필요한 녹막이페인트 칠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 기구손료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 OX0** 조합페인트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10.01000	조합페인트칠	철재면, 2회 붓칠	m ²	5,438	78%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계선주 및 차막이 설치, 거푸집(이글루 블록) 제작 등에 필요한 조합페인트 칠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 기구손료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 OX0** 줄눈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OX011.01000	줄눈 설치		m	522	100%

【단가정의】

- ① 이 단가는 줄눈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② 이 단가는 시공량 700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줄눈재, 백업재 등 부대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제3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제3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공사규모 ²⁾	공사종류 ³⁾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¹⁾	비고 ²⁾
5억 미만	일반건설(갑)	2.22	89.7%
	일반건설(을)	2.38	89.7%
	특수및기타	1.07	86.4%
	철도궤도	2.11	90.7%
	중건설	2.88	90.5%
5억~50억 미만	일반건설(갑)	1.64+ 3,294천원	90.5%
	일반건설(을)	1.77+ 3,498천원	90.5%
	특수및기타	0.79+ 1,647천원	87.2%
	철도궤도	1.37+ 4,211천원	91.6%
	중건설	1.96+ 5,148천원	91.4%
50억 이상	일반건설(갑)	1.76	93.7%
	일반건설(을)	1.89	93.7%
	특수및기타	0.85	90.4%
	철도궤도	1.50	94.8%
	중건설	2.14	94.5%

1) 본 산업안전관리비율은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와 관급자재비의 합계금액에 적용한다.

2) 공사규모는 “직접공사비[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에 비고에 제시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공사종류(건설업)의 분류,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를 따른다.

※ 본 자료는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39조제3항에 기초하여 “완성공사원기구 성분석(대한건설협회발간 공인통계자료)” 및 외주비 구성비율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이며,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른다.

※ 본 자료는 예정가격 작성에 적용하며,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계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경비율

공사규모 ²⁾	공사기간	기타경비율 ¹⁾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5.7	5.3	5.1	5.4
	7~12개월 (365일)	5.8	5.7	5.5	5.5
	12~36개월 (1095일)	5.9	6.4	6.2	5.6
	36개월이상 (1096일)	6.4	7.0	6.8	6.0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6.0	6.2	6.0	5.7
	7~12개월 (365일)	6.1	6.6	6.4	5.8
	12~36개월 (1095일)	6.3	7.3	7.1	5.9
	36개월이상 (1096일)	6.6	7.9	7.7	6.4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6.1	5.8	5.6	5.8
	7~12개월 (365일)	6.1	6.2	6.1	5.8
	12~36개월 (1095일)	6.3	7.0	6.8	5.9
	36개월이상 (1096일)	6.8	7.6	7.4	6.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5.5	5.5	5.3	5.1
	7~12개월 (365일)	5.5	5.9	5.7	5.2
	12~36개월 (1095일)	5.7	6.6	6.4	5.4
	36개월이상 (1096일)	6.1	7.2	7.0	5.8

- 1) 본 기타경비율은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에 적용한다.
- 2) 공사규모는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 3) 기타경비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의 정의는 조달청의 기준을 따른다.

※ 본 자료는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39조제3항에 기초하여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대한건설협회발간 공인통계자료)” 및 외주비 구성비율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이며,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른다.

□ 이윤율

이윤율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의 규모등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별 기준을 따른다.

참 고 자 료

1.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1
2.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9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446호 [제정 2003. 12. 31]
건설교통부훈령 제643호 [개정 2006. 12. 15]
국토해양부훈령 제 65호 [개정 2008. 04. 17]
국토해양부훈령 제 78호 [개정 2008. 05. 06]
국토해양부훈령 제360호 [개정 2009. 08. 21]
국토해양부훈령 제863호 [개정 2012. 08. 10]
국토해양부훈령 제956호 [개정 2013. 02. 12]
국토교통부훈령 제125호 [개정 2013. 04. 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부문의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실적공사비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 및 품셈의 제정·개정, 연구·조사, 해석 및 보급 등 실적공사비 및 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실적공사비 및 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단체의 장(이하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대한측량협회장 또는 건설신기술협회장(이하 “관련협회의 장”이라 한다)
3.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실적공사비 및 품셈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실적공사비 및 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분할급으로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실적공사비 및 품셈 관리업무, 기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실적공사비의 관리

제7조(실적공사비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적공사비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공사비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2. 실적공사비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3. 실적공사비 단가집 및 건설공사비 지수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법정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적공사비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수 있다.

제8조(실적공사비 자료의 제출)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 후보공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적공사비 자료를 작성하여 5월말과 11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적공사비 자료를 작성하여 5월말과 11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이 국토교통부 제정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실적공사비 단가” 라한다)에 대한 심의안을 마련하고,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공사비 단가를 확정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공사비 단가 심의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 단가가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공고한다.

제10조(건설공사비 지수의 관리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비 지수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종류별 건설공사비 지수를 산출하여 매월 발표하여야한다.

제 3 장 표준품셈의 관리

제11조(표준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①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표준품셈의 제정·개정 및 관리(이하 “표준품셈의 제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 신자재 사용, 공법 개발 등에 따른 표준품셈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 항목을 각 그룹별로 분류하여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품셈의 제정 등이 필요한 항목을 상시적으로 검토·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특정항목에 대한 표준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조사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안건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한 자는 표준품셈관리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시 조사·연구를 위한 제반 편의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품셈의 제정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
2. 표준품셈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
3. 표준품셈의 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4. 기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수 있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집된 표준품셈 항목을 제1항에 의한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표준품셈의 제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표준품셈의 확정)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다만, 법령의 제·개정 및 금리, 환율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지 않고 수시로 표준품셈을 제·개정할 수 있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최종성과품을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운영

제14조(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내에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사비산정위원회에 실적공사비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적공사비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의 공사비산정위원회에 표준품셈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이하 “그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표준품셈의 제정 등의 필요한 항목 검토
 2.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심의
 3. 기타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품셈에 관한 사항
- ④ 공사비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그룹별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⑤ 공사비산정위원회 등의 위원은 건설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그룹별위원회는 시민단체 및 관련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세부지침)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 관리 및 품셈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신기술품셈의 관리

제16조(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① 건설기술관리법제39조에 따라 건설신기술 지정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차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4항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기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설신기술 현장실사에 참석하여 신기술원가계산서 및 건설신기술품셈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품셈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전까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건설신기술품셈의 확정)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2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전까지 건설신기술품셈을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 후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개정 시 보호기간 내 건설신기술품셈의 개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신기술개발자의 심의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 또는 지방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건설신기술 변경사항 인정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변경내용 확인 후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 확정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이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03·12·3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훈령의 개정)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389호)중 제54조 내지 제59조는 삭제한다.

부 칙 <06·12·15>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내용은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446호)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08·4·1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5·6>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9·8·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8·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2·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실적공사비 축적서식

1) 총괄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운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2) 공종별 실적공사비 자료

공종코드	공종명칭	단 위	수 량	단 가		비 고
				예정단가	계약단가	

* 실적공사비 자료 조사 대상공종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지 2]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을 위한 작성서식

I. 신청자 정보

작성기관		부 서	
성 명		전 화	
팩 스		이 메 일	

II. 신청 신기술 개요

2-1. 신기술명

2-2. 신기술 개요

* 귀사의 신기술 개요와 기존기술과의 차이를 간략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 신기술의 범위

* 신청서 상 귀사의 신기술 고유범위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Ⅲ. 신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는 신기술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신기술의 고유 영역을 독립적인 시공프로세스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대상 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시공절차 비교표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부문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비교대상 기존기술 설명	* 비교대상 기술의 적정성 설명
기존기술 명 : 기존기술 특성 및 신기술 대체 적정성 - - -	

* 비교대상 기술은 아래 유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신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기술특성 보유

**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특허기술 또는 기존 신기술

* 표준품셈 : www.kict.re.kr → 국토교통전자정보관 → 공사정보 → 건설공사표준품셈

[작성예시]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부분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예시1) 참고하고 있는 표준품셈 상세히 제시			
①거푸집제작	①거푸집 제작	토목 6-3-2 합판거푸집 (구체화 필요)	
	②특수시트 부착	자사기준	○
②거푸집 조립	③거푸집 조립	토목 6-3-2 합판거푸집 (4회)	
③콘크리트 타설	④콘크리트 타설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타설 (무근/50㎡미만)	
예시2) 신기술 영역 세분화 제시		표준품셈 관련 부분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③ 말뚝시공	③ 말뚝시공 - 일렬말뚝 - H말뚝 - 캡형 유공강판보강재 사용	- 신기술 고유영역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시공 절차 분리 필요	
↓	↓		
③ 말뚝시공	③ 말뚝시공-일렬 H말 뚝		
-	④ 캡형 유공강판보강재		○

3-2 시공절차 비교표 설명자료

“3-1 시공절차 비교표”에 제시하신 기존기술 및 신기술 시공절차의 세부 항목별 설명자료를 사진 또는 도해(圖解) 등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신기술 원가산정기준

4-1 시공절차 세부항목별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

(단위)

시공절차 세부항목 ^[1]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2]	출처 ^[3]
	품명	규격			

[주⁴] ①

②

③

⋮

자사기준 적용 품 설명	* 자사기준 적용항목에 대한 간략한 사유 설명
가. 항목명 : 유 형 : 조정사유 : 조정내용 : 나. 항목명 :	

* 자사기준 적용 품 유형

- ** 1.현장실사에 의한 조사 값 적용 : 실사내용(조사기준) 간략 설명
- ** 2.유사 관련 기준 응용 : 응용한 품 기준 및 증감사유 설명
- ** 3.개발 또는 신규장비 적용 : 손료산정기준 설명

① “3-1 시공절차 비교표”의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 중 복수의 세부항목이 1개의 정부 표준품셈과 대응되는 경우는 출처가 동일한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모두 기입(아래 예시 첫칸)
- 표준품셈 복수 항목을 조합하여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구성한 경우,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을 표준품셈 단위로 분개하여 출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

② 소요량 적용기준이 복잡한 경우 등 필요시 적절하게 양식변경 또는 별지 사용

③ 정부 표준품셈이 있는 항목은 표준품셈의 부문, 장-절-항 표시, 표준품셈 없는 경우는 출처(자사기준 등) 기술

④ 주기사항은 제시한 품의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등, 설계시 참고사항을 명확하게 기술

[작성예시]

(m²)

시공절차 세부항목 ^①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②	출처 ^③
	품명	규격			
①거푸집제작 ③거푸집조립 ...	합판		m ²	0.47 (3회 기준)	표준품셈 토목, 6-3-2 합판거푸집
	각재		m ³	0.018(3회 기준)	
	...				
	형틀목공		인	0.10 (3회 기준)	
② 특수시트부 착	시트재료		m ²	1.252	자사기준
	보통인부		인	0.042	
...					

[주] ① 본 품은 소운반 및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② 동바리 재료 및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수중에서 거푸집을 조립·해체할 때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자사기준 적용 품 설명(예시)	* 자사기준 적용항목에 대한 간략한 사유 설명
- 항목명 : ②특수시트부착 유 형 : 유사 관련 기준 응용(관련품셈 건축 13-6-1 합성고분자 시트) 조정사유 : 현행품의 경우 방수공이 투입되고 있으나, 시공이 단순화되어 보통인부 로 시공가능 조정내용 : 방수공 삭제, 현행품셈 방수공+ 보통인부 투입기준(0.6인) 품의 70%를 보통인부에 적용 * 장비개발의 경우 기계경비(손료, 운전경비, 장비가격) 기준 제시 * 재료의 경우 할증포함 여부 제시 * 공구손료기준(공구 종류)제시	

[별지 3]

원가계산서 적정성 검토서식

□ 신청 신기술명(관리번호 호)

I. 신기술 분류

기존공법 보완	자재/재료/장비 개발(보완)	독립기술	기타

II. 신청 신기술 시공절차 및 고유영역

1) 시공절차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3) 표준품셈 관련항목(장,절,항)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4) 비교대상 기존기술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5) 신청 신기술 고유영역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보완사항	* 번호별로 사유 및 보완내용 설명

Ⅲ. 신청 신기술 원가산정 적정성

1) 3-1의 시공절차 별 세부항목과 일치여부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2) 출처(품셈)제시여부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3) 현행 품셈과 비교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4) 적용단위 제시여부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5) 간접비 등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6) 일위대가와 일치 여부 - 항목, 수량, 단위 등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7) 적용단가, 신규자재, 노임단가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8) 수량산출 및 할증 등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9) 기존 기술과의 공사비 비교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10) 신기술 범위내에서 작성여부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보완사항	* 번호별로 사유 및 보완내용 설명

기타의견

* 해당 항목별 종합검토의견 제시

--	--

년 월 일

검토기관 :

검 토 자 : (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정(재발령) 2012. 9. 2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 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

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경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7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8조(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1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 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

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 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제19조(경비) ①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

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개정 2011.5.13.>

일 반 건 설 공 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미만	6.0	5억원미만	6.0
50억원~300억원미만	5.5	5억~30억원미만	5.5
300억원이상	5.0	30억원이상	5.0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2조(공사손해보험료) ①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여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한 곤란한 경

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에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 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6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역대상기관

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다.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나.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제1호 나목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

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 이어야 한다.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2억원(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일 것.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②원가계산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31조의2(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제재)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법인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당해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다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절 보 칙

제33조(특례설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최근의 발주된 동종의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36조(세부시행기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7조(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

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8조(직접공사비) ①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체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은 별도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직접공사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9조(간접공사비) ①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

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환경보전비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③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다.

④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일반관리비) ①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5.13.>

일반건설공사		전문·전자·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원미만	6.0	5억원미만	6.0
50억원~300억원미만	5.5	5억원~30억원미만	5.5
300억원이상	5.0	30억원이상	5.0

제4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공사손해보험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43조(총괄집계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6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세부시행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제45조(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이 장은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등록자격요건) 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상 사업목적에 가격조사업무가 포함되어있는 비영리법인
2.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월1회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47조(등록신청)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7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제46조제2호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 재직증명서 1부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 별표5(기술·기능분야)에 의한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직무분야 중 3개이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인 자의 재직증명서 1부

제48조(등록증의 교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7조에 의한 조사기관등록신청자가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표 8의 조사기관등록증을 교부한다.

제49조(가격정보에 관한 간행물) ①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매월 1회이상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에는 조사기관의 등록번호와 등록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제46조의 등록요건과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별표 9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조사기관등록증을 재발급한다. 단, 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1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될 때
2. 정당한 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합 등 허위로 가격을 게재하는 경우
3.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3회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타조사원이 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2조(등록기관의 지도감독)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5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가격조사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년 1회이상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53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제4장 관련)

제1조(조사대상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할 가격은 정부가 기업 등의 대량수요자가 생산자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이하 "대량수요자 도매가격"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외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조(가격의 구분) ①가격은 그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가격, 생산자공표가격, 행정지도가격으로 구분한다.

1. "시장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생산자공표가격"이라 함은 상품의 성능·시방 등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3. "행정지도가격"이라 함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 거래가격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가격은 그 유통단계에 따라 생산자가격, 도매가격, 대리점가격 또는 소매가격으로 구분한다.

1. "생산자가격"이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2. "대리점가격"이라 함은 대리점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3. "소매가격"이라 함은 소매상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③가격에는 판매방법, 거래량, 결제조건, 기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포함 여부 등 거래조건에 의한 구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판매방법"이라 함은 생산자등이 상품을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장소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량"이라 함은 통상적인 거래기준량 즉 거래수량하한선을 말한다.

3. "결제조건"은 현금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4. 기타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의 포함여부를 구분한다.

제3조(조사대상상품) ①조사기관이 조사대상상품을 선정할 경우 당해상품의 유통성·장래성 및 다른 상품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위 품조별로 1,000개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이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생산자에 따라 그 상품의 성능·시방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를 구분한다.(이하 "생산자 구분품목"이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에 대하여는 별표 10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4조(조사처) ①조사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도시에 있어 당해상품의 취급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여 3개업체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에 대하여는 별표 11 및 별표 12에 의한 조사대장 및 품목별 조사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5조(조사대상도시) ①조사대상도시는 인구·산업·교육문화·행정·도로교통사정·자연지리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되 서울지역, 경기지역, 강원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및 제주지역으로 한다.

제6조(조사방법) ①가격조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기간내에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면접에 의한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의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자재의 품귀, 2중가격 형성 등으로 조사처에 대한 조사만으로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조사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처(면접자포함), 대상 품종, 조사자,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가격 및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조사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상품, 조사처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공표가격의 결정)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할 가격은 최빈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시조사)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조사를 의뢰하는 수시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조사요원 등) ①조사기관의 가격조사에 종사하는 조사요원(이하 "조사요원"이라한다.)은 전임제로 한다.

②조사요원은 30인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지역별 각 1인이상을 포함한다.

③조사기관은 조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하고 기타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조사요원은 소정의 조사증표를 휴대하여야하고, 면접자가 이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응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요원 외에 제47조제4호에 의한 자가 그 직무분야별로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보고) 조사기관은 제3조,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상품 기본조사표, 조사처 대장, 조사요원의 자격, 윤리강령, 조사증표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보존기한) 조사기간은 제3조위 규정에 의한 조사상품기본조사표는 5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 대장 및 조사조서 등은 3년이상 보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 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제재사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조원가계산서

품명: 생산량:
규격: 단위: 제조기간: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공사기간: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비 기타법정경비				
		소계				
		일반관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0%]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 (가)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계상방법

-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구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 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사 규모별	50억원 미만	14
	50~300억원 미만	15
	300억원 이상	16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별표3)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타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11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12)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915,894원
연구원	월 2,235,867원
연구보조원	월 1,494,604원
보조원	월 1,120,99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2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2011년 4.0%)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별표 6) 총괄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운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별표 7)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 소	
④법인설립허가관청	
<p>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화 :)</p> <p style="text-align: right;">재정경제부 장관 귀하</p>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3. 조사요원재직증명서 1부.4. 품셈분야별 기술자재직증명서 1부.

22451-01511일
'93.5.18 승인

201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표 8)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증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년 월 일)

1. 법 인 명 :
2. 대표자성명 :
3. 주 소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별표 9)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① 등록번호	제 호 (년 월 일)	
② 법인명		
③ 대표자성명		
④ 주소		
변경내용	변경전의 사항	변경후의 사항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사항중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재정경제부 장관 귀하</p>		

22451-01611일
'93.5.18 승인

201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10) 조사상품기본조사표

① 상품명	② 통상명칭			③ 코드 번호	④ 수록단위 품종명
상품내용		품질·규격		생산자별허용구분	
⑤ 주요용도	⑧ 공인규격 유무종류	⑩ 단위품목 구분기준		⑭ 생산자별 구분여부	⑯ 기본단위
⑥ 규제질	⑨ 공인형식 또는성능	⑪ 규격품목과 유통품목수		⑮ 동생산개수	⑰ 포장단위 및그수량
⑦ 상품형상	⑫ 규격유무별 유통비중	⑫ 중용품목과 거래비중		⑯ 조사대상 생생의범위	⑱ 거래단위
조사 가격의 종류			* 1 수급사정(수량 또는 금액)		
조사기간별 연도별 가 격 성 격 조 사 지 역 조 사 단 계 단 위 거 래 량 의 구 분	연도별	년	년	년	년
	수급구분 품류 수요	연도별	년	년	년
		㉘ 년간능력 ㉙ 국 산 ㉚ 수 입 ㉛ 년간능력 ㉜ 내 수 ㉝ 수 출	연도별 년간능력 국 산 수 입 년간능력 내 수 수 출	연도별 년 년 년 년 년	연도별 년 년 년 년 년
㉞ 계 절 성 ㉟ 관 련 단 계	계 절 성 관 련 단 계	연도별 년 년 년 년 년	연도별 년 년 년 년 년	연도별 년 년 년 년 년	연도별 년 년 년 년 년
참고사항		단 계 성 격 종 목 별 단 계 연구 단 계 정 부 기 관		전 화 번 호 소 속 · 직 위 성 명	
		단 계 성 격 종 목 별 단 계 연구 단 계 정 부 기 관		전 화 번 호 소 속 · 직 위 성 명	
		단 계 성 격 종 목 별 단 계 연구 단 계 정 부 기 관		전 화 번 호 소 속 · 직 위 성 명	
		단 계 성 격 종 목 별 단 계 연구 단 계 정 부 기 관		전 화 번 호 소 속 · 직 위 성 명	
		단 계 성 격 종 목 별 단 계 연구 단 계 정 부 기 관		전 화 번 호 소 속 · 직 위 성 명	
		단 계 성 격 종 목 별 단 계 연구 단 계 정 부 기 관		전 화 번 호 소 속 · 직 위 성 명	
		단 계 성 격 종 목 별 단 계 연구 단 계 정 부 기 관		전 화 번 호 소 속 · 직 위 성 명	

297mm×548/nt
신문용지 548/nt

22451-01811 일
93.5.18 승인

2. 예정가격작성기준

※ 조사상품기본조사표의 기재요령 (별표 10 서식)

- (1)상품학상의 상품명으로서 공인된 정식명칭
- (2)공식명칭이외에 시중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명칭
- (3)코오드번호 부여 후에 기입
- (4)수록단위품종 편성 후에 기입
- (5)용도를 기입하되, 용도가 다양할 시에는 용도비중 60%내의 그용도
- (6)성분35%이상시는 ①, 성분 35%미만시는 60%내중 다성분②
- (7)상품의 외관상의 형태, 형상
- (8)공진청에서 공인된 KS규격 또는 국제규격의 종류
- (9)형식승인된 공인된 시험성능
- (10)규격품과 비규격품의 유통비중
- (11)단위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의 종류
- (12)규격상에 있는 총 품목수와 시중에서 유통되는 품목수
- (13)단위품목중 시중거래비중이 가장높은 품목과 그거래비중
- (14)품질, 규격, 형식, 성능 등에서 생산자간의 차이로 구분취급의 필요성 유무
- (15)총생산자수
- (16)총생산자중 그 생산량이 상위 60%이내에 드는 생산자수
- (17)상품의 수량을 계산하는 기초단위
- (18)상품의 포장단위와 포장단위의 수량
- (19)시중에 유통되는 거래단위
- (20)가격이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 생산자공표, 행정지도로 구분
- (21)조사대상도시수에 따라 서울(전국), 2대도시, 5대도시, 9대도시등
- (22)유통단계 중 조사대상 단계를 표시하되, 필요시에는 2개단계도 표시
- (23)동일조사단계에서도 단위거래량의 과다에 따라 가격의 차이에 따른 구분여부 표시
- (24)국산과 수입을 합한 연간공급능력을 합산표시
- (25) ~ (26) 생략
- (27)내수와 수출을 합한 연간수요능력을 합산표시
- (28) ~ (29) 생략
- (30)상품수급에 있어서 계절적인변화시기를 성수기와 비수기간을 표시
- (31)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 (32)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 (33)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 (34)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이외에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
- (35)조사상품에 관계가 있는 단체등에서 자문을 구할 기관
- (36)조사상품에 관해 업계, 학계의 전문가중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

2.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11) 조사처 대장

1. 업체개요

상 호	대 표 자	형 태
소 재 지	창 립 년 월 일	취 급 종 목
소 속 업 종 별 단 체	경 쟁 업 체 수	

2. 면접담당자

위 측 년 월 일	성 명	부서, 직위	전 화

22451-01911일
'93.5.18 승인

201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표 12) 품목별조사처대장

조사품목		조사처			면접담당자			등록	
코드 번호	품종별	업체별	업태	소재지	성명	부서·직 위	직통 전화	접수	말소

22451-02011일
'93.5.18 승인

201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